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00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김예지
성일종 · 김승수 · 김상훈
강대식 · 윤상현 · 나경원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로(農路)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 활용 등에 사용되는 길로서 필수 농업생산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 자연재해와 노후화로 인한 침하·파손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야간 안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로에 대하여는 노면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로에 대하여는 교량난간 및 노면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등급제 도입·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